

員.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.
 以上으로 審査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
 감사합니다.

○議長 白昌鉉 孟今龍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.
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5件
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,
 서울特別市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,
 서울特別市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,
 서울特別市地方公社等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
 中改正條例案, 서울特別市都市開發事業에대한
 市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각각 議
 決하고자 합니다.

議長님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
 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
 異議 없으시면 以上 5件이 各各 可決되었
 음을 宣布합니다.
 (議事棒 3打)

(參 照)

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
 이 개정한다.
 제2조제1항중 “120인이내”를 “150인이내”로
 동조제2항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한 자로
 한다”로, 동조제3항중 “위원장이 지명한”을
 “위원장이 미리 지명한”으로 한다.
 제3조제1호중 “건설공사의 타당성”을 “건설공
 사의 설계의 타당성”으로, 동조제3호중 “시
 장,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”을 “기
 타 시장”으로 한다.
 제5조제3항중 “30인이내”를 “15인이내로”로,
 동조제4항중 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
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명한다”를
 “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임한다”로
 하고, 동조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7항
 내지 제10항으로 하고, 동조제5항 및 제6
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8항중 “관
 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”를 “관계공무원
 을 회의에”로 한다.

⑤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
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.

⑥소위원회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
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
 심의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본문중 “제출하여야 한다”를 “심
 의요청하여야 한다”로, “제3조제1항제1호”를
 “제3조제1호”로 하고, 동항제1호 및 제2호
 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항 제3호 및 제
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
 사로서 기본설계를 완료할 때. 다만, 기
 본설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설계
 를 완료할 때
2.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
 사로서 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
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
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
 서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시 실시설계에
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공사의
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
4.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
 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
 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
 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
 공사

제7조제1항중 “제7조”를 “제6조”로 한다.

제9조제4항중 “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
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”를 “필요한 사항
 은 위원장이 정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
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
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
 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
 는 6월이상의 해외여행등으로 그 직무를
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3. 위원이 직접 설계, 감리 또는 시공한

<p>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</p> <p>4.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설시설계심의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전에 이미 기본설계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심의를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를 삭제한다.</p> <p>제5조중 “본부와 하부기관에”를 “본부에”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재사업소장이 행한 행정처분·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건설자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종합건설본부장의 행위 또는 종합건설본부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.</p> <p>③(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건설자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를, 건설자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합건설본부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<p>①본부장 밑에 청소연구소 및 난지도관리사업소를 둔다.</p> <p>제4조제2항중 “난지도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위생처리사업소장은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화공사무관으로 하며,”를 “난지도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며,”로 한다.</p> <p>(별표)를 별지와 같이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처리사업소장이 행한 행정처분·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위생처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청소사업본부장의 행위 또는 청소사업본부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.</p> <p>③(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위생처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사업본부를, 위생처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사업본부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(다음 페이지에 계속)</p>
--	---